

■ 2014년 자체감사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1	현지시정	자동차보험 가수금 미대체	<p>결산시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정리하여야 함에도, 원무팀은 자동차보험 가수금을 대체함에 있어 2013년도에 입금된 수입금 총 2,457,458,446원 중 2,456,108,262원을 대체하였으나, 2013년1월 3일 삼성 ○○○으로 입금된 10,530원 등 총 346건, 1,350,184원의 가수금에 대해서는 본 계정(111435, 외래자보미수금)으로 정리하지 아니함.</p>	<p>원무팀으로 하여금 미대체한 가수금 1,350,184원에 대하여 본 계정(계정과목111435, 외래자보미수금)으로 회계처리토록 현지시정 조치함.</p>	분당결산
2	현지시정	선급비용(부서운영경비) 결산누락	<p>총무팀은 2013회계연도에 각 부서에 지급하고, 비용처리하지 못한 미정산(미사용)부서운영경비 잔액에 대하여는 2013.12.31.현재기준으로 환입 또는 선급비용으로 결산에 반영해야 하나 부서운영경비로 지급한 총 3,717,114,206원 중 33건, 12,070,572원에 대해서는 환입 또는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함.</p>	<p>총무팀으로 하여금 미정산된 부서운영경비 33건, 12,070,572원을 기타선급비용(계정과목 11219)으로 회계처리토록 현지시정 조치함</p>	분당결산
3	현지시정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p>총무팀은 2013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RFID 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사업비 168,800천원) 등 2건, 569,800천원은 수익관</p>	<p>총무팀으로 하여금 수익적 지출에 총당하기 위해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국고보</p>	분당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련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수익(의료외수익 항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기타기본금(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수익을 과소계상	조금수익(의료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4	현지시정	무형자산 미등재 및 감가상각비 미계상	2013.2.28.과 6.1.에 완료한 중앙치매센터의 홈페이지 구축용역과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총 80,000천원은 “외주 전산개발비”로서 무형자산임에도 “각종홍보물제작비와 기타광고선전비” 계정으로 당기비용처리	총무팀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구축용역비등 2건, 총 80,000천원을 무형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산에 반영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분당결산
5	현지시정	타병원 발령 교수의 퇴직급여총당금 등 미계상	총무팀은 보라매병원에서 분당병원으로 이동한 000교수의 1인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총당금 25,881,380원을 추계하여 결산에 미반영, 또한, 분당병원에서 보라매병원으로 이동한 △△△교수의 1인의 대해서는 분당병원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총당금 66,895,250원을 추계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	총무팀으로 하여금 분당-보라매병원 간 근무지를 이동한 000교수의 3인의 퇴직급여총당금과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결산에 반영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분당결산
6	현지시정	회계계정과목(임대업체 관리비) 분류 부적정	병원은 임대료수입과 별도로 병원이 총괄 납부한 관리비(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중 임대업체 부담분을 각 업체의 실사용량 또는 임대면적에	총무팀으로 하여금 임대업체가 부담한 전기료 등총 576,767,874원을 관리비의	분당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따라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 시 병원이 총괄 납부한 관리비 비용계정에서 동 부담금은 차감하고 실제 병원이 부담한 관리비만을 비용으로 계상해야하나, '13년도 임대업체가 부담한 utility 비용은 분당병원 관리비(전력료)항목에서 차감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료외수익(기타잡이익) 항목으로 계상하여 관리비와 의료외수익을 각각 과대계상함.	각 계정에서 차감하여 결산에 반영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7	환수/시정(20,594,883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누락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병원은 임대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13년 10월 (주)아워홈의 도시가스분담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989,866)를 누락하였고, 2011.07.01. 과세대상인 쌍꺼풀수술등 성형수술에 대한 매입세액(추계:19,605,017원)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함	2013년도 1월분 아워홈 관리비 매입세액 미공제분(989,866원)과 2011.7월 ~ 2013년까지 쌍꺼풀수술 등에 사용된 진료재료비용 미공제액(19,605,017원) 등 총 20,594,883원을 환급받음	분당결산
8	환수/시정(9.346)	공사계약 환경관리비 과다계상	(주)대우건설과 2012.09.27. '본관동 리모델링 1단계 공사(계약금액 : 11,849,793천원)	과다지급된 환경관리비 9,346,796원을 계약업	분당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796 원)		를 체결하면서 환경관리비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포함한 환경관리비 155,052,734원을 계상함으로써 32,297,179원을 과다 계상하였음.	체에 통보하여 환수하였고 나머지 과다계상된 22,950,383원에 대하여는 즉시 계약 변경함.	
9	권고	퇴직연금 예치금 관리 비효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에 의하면 퇴직연금예치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등 타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동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는 현재 퇴직연금예치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 적립율(21.63%)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퇴직자 발생시 퇴직급여 예치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 비율은 총 예치금의 최대 5.1%에서 최소 4.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은행권의 퇴직연금예치금에 대하여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와 장단기 상품별 이율을 고려하여 이자수익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분당 결산
10	권고	신용카드 공용매출전 표대금 특약 미체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체 진료비 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2003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공용매출전표사용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2013년도 분당서	가맹점 계약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사와 “공용매출전표 사용 특약”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	분당 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울대학교병원의 신용카드사별 수납건수에 본원의 공용매출전표 특약단가를 적용할 경우 11,347,002원(추정액) 추가 수입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록 함	
11	모범 사례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직원교육 활성화에 기여	교육수련실 교육전담 ○○○는 2011년부터 ‘선택과 집중’ 이라는 명제 하에 의료기관 최초로 진단기반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인 ‘Leadership Intensive Course’ 를 도입하는 한편 정체기에 접어든 사이버 연수원에 대하여 과정수 및 교육기간을 대폭 늘려 직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교육이수자들의 교육만족도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교육전담 이성호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임	분당 결산
12	현지 시정	각종 비용 타기관 분담금 회계처리 누락	교육연구부는 개별, 병원별 부담하기로 한 우수인턴 유치설명회 경비 중 보라매병원분(1,248,739원)과 국립암센터분(1,702,826원), 전공의 통합교육 경비 중 국립암센터분(2,086,439원) 및 신입인턴 직무역량강화 교육 경비 중 보라매병원분(8,293,975원)은 분담금을 미납하여 미수금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결산에 누락하였고	교육경비 및 컨설팅비 중 미입금 된 5건, 총 32,331,979원을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함	본원 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또한 중동 SKSC 병원 위탁운영 입찰 참여에 따른 소요비용 중 분당서울대병원의 분담액(19,000,000원)이 본원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결산에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3	현지시정	외부교직원 주차장운영 등 계정과목 회계처리 오류	중요주차장 등의 교직원 이용료(1~6월분) 263,196,000원을 주차장운영비용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2013년도 강남센터의 미술품 렌탈료(하반기분) 10,890,000원을 기타임차료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각각 기타외주용역비, 기타의 환경정리비로 회계 처리함으로서 과목 분류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함.	교직원 주차장 이용료 263,196,000원은 의료외비용의 “주차장 운영비용”(71210)으로 정정하고, 2013년도 하반기 렌탈료 10,890,000원은 “기타임차료”계정으로 정정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본원 결산
14	현지시정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시설사업 회계처리중 GR복합형 화재수신기 설치공사 등 4건 346,788,000원은 자본적 지출 또는 건설중인 자산에 해당함에도 건물유지보수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서 당기비용을 345,188,501원 과다 계상 회계처리 함	GR복합형 화재수신기 설치공사 외 1건, 총 113,600천원에 대하여 준공일을 기준으로 자산등재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하였고 또한 응급의료센터 및 영상의학	본원 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과 리모델링 설계용역 외 1건, 총 233,188천원을 건물유지보수비 계정에서 시설비(건설가) 계정으로 정정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15	현지시정	원 외 처 방 전 삭감액 환수 판결금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p>병원은 2012.05.11. 원외처방 삭감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1심 소송(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636 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하였고, 판결 결과 일부 승소하여 2013.10.2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25,515,894원(원금 393,927,258원, 법정이자 31,588,636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았고 위 가지급금 총 원금 393,927,258원은 당초 원외처방삭감액에 대한 회계처리 시 적용한 의료수익(원외처방삭감액)으로, 법정이자 31,588,636원은 의료외수익(기타의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가지급금 총 425,515,894원을 의료비용(소송제비용, 514111) 차감으로 회계 처리함.</p>	<p>가지급금 중 원금 393,927,258원은 의료수익으로, 법정이자 31,588,636원은 의료외수익으로 정정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p>	본원결산
16	현지시정	고정자산 취득 비용 처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등재 후 감가상각	방사선휴대용핵종분석기 외 5건	본원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리 부적정	을 하고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함에도 취득금액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 167,028,415원을 과대 계상함.	총 179,020,0005원에 대해 각각 '비용' 계정에 서 의료기기, 건설가계정 및 컴퓨터소프트웨어로 정정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17	현지시정	학구환자감면 회계처리 부적정	8월 본원 입원학구 감면액 15,834,333원은 학구환자 감면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진료비에누리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적정을 기하지 못함 .	연구용환자 진료비 감면액 15,834,333을 학구환자감면 계정으로 정정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본원 결산
18	현지시정	OECF차관 원리금 지원 및 반환 회계처리 부적정	2013.10.15.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1,605,000천원 중 이자분 84,000천원을 국고보조금수익이 아닌 기타기본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13년 OECF 보조금 집행 잔액 626,042,095원(원금분 593,296,540원, 이자분 32,745,555원)을 의료외비용 중 잡손실(72900)로 회계처리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OECF차관 국고보조금 중 이자분 지원금 및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수익으로, 원금분 반환금은 기타기본금으로 총 710,042,095원을 정정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본원 결산
19	현지시정	외화보증금 환산액 회계처리 누락	2013.3.8. 아부다비계좌개설을 위해 지급한 보증금 \$15,500(기타보증금 16,975,600원, 1\$:1095.2원)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결산에 계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자산인 아부다비계좌개설보증금(\$15,500)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의 환율(1\$=1055.3원)로	본원 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 과목으로 당기손익 처리하여야 함에도, 기타보증금을 결산일(13.12.31.)기준으로 환산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손실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함.	환산한 가액(16,357,150원)을 결산에 반영토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환산 손실 618,450원은 외화환산손실 계정으로 계상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20	현지시정	자동차보험료 미경과비용 회계처리 부적정	업무용 자동차(70도1620) 등 5대의 보험료 총 11,917,179원 중 차기년도 자동차보험료 9,856,689원을 선급비용으로 상하지 아니함.	보험기간이 미경과한 차기년도 해당 보험료 9,856,689원은 자동차보험료(비용)계정에서 차감하고 선급비용(자산)계정으로 계상토록 현지시정 조치함.	본원결산
21	환수/시정 (1,861,621원)	주차장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누락	진료에 부수되어 무료 제공되는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료 감면액은 주차용역의 면세사업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고, 실제 주차료 수납액은 과세사업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이 둘을 합한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분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차장 운영경비에 포함된 “공통매입세액”을 주차용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주차장 운영경비에 포함된 공통매입세액(1,861,621원)을 조속히 공제받도록 함(진행중)	본원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역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함에도, 경리과는 주차장 운영경비에 포함된 공통매입세액 공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861,627원을 과다납부함.		
22	환수/시정(387,01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과다 지급	경리과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차감 징수하지 않고 유치수수료 전액을 지급하고, 차감 징수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 대리납부하여 업체에게 부가가치세액만큼의 지급수수료를 과다지급함	과다 지급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387,010원)를 환수하도록 함.(진행 중)	본원결산
23	개선	의학사진실 수익 및 기타광고선전비 회계처리 부적정	서울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 20조(계산의 원칙)에 의하면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하며,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고 규정하나, 경리과는 의학사진실에서 통보된 22,586,000원에 대해서 사진실수익(61240)과 기타광고선전비(51579)로 회계처리하여 적정을 기하지 못함	의학사진실의 경우처럼 원내부용은 서로부터 의뢰받아 자체비용으로 생산한 결과물이 수익으로 처리하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회계처리함	본원결산
24	현지시정	신입인턴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미지급비용 미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3년 신입인턴 직무역량강화교육과 2014년 우수	미계상한 미지급비용 9,542,714원을 결산에 계	보라매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계상	인턴 유치설명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보라매병원 분담금 각 8,293,975원과 1,248,739원을 지급할 것을 통보 받고 당해년도 분담금 9,542,714원을 결산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음.	상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25	현지시정	단기금융상품 미수 이자수익 미계상	보라매병원은 7개의 단기금융상품에 6,430,900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중 외부위탁연구비 1,000,000천원, 연구중앙경비 300,000천원(교육연구실행정팀 관리) 및 연명치료 중단관련 후원기금 130,900천원(고객상담실 관리) 등 총 1,430,900천원에 대한 2013년 발생한 미수 이자수익 14,870,225원을 결산에 계상되지 아니함	미계상한 미수이자수익 14,870,225원을 결산에 계상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보라매결산
26		전력료에 대한 미경과비용 미대체	보라매병원은 (주)엘지유플러스와 체결한 중계기 설치에 관한 합의서 제2조(전력료 지급 및 산정방법)에 따라 2013.9.10. (주)엘지유플러스로부터 1년분(2013.8.1.~2014.7.31) 전력료 3,820,000원을 선지급 받아 전액 전력료(비용) 계정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결산일 기준으로 미경과한 차기년도 전력료(14.01.01. ~ 14.7.31.)인 2,229,205원을 선	(주)엘지유플러스로부터 선지급받은 1년분 전력료 3,820,000원은 2년 중 결산일 기준 미경과분인 전력료 2,229,205원은 선수금계정으로 대체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보라매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수금으로 계정 대체하여야 함에도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27	현지시정	문서보관창고 임차비용과다 계상	교육연구실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문서보관창고(캐릭터그린 빌아파트)에 대한 임차료를 상향한 900,000원 기 회계규칙에 따라 2013년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결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2014. 1월분 건물임차료 900,000원을 2013년도 비용으로 과다계상함.	2013년도 비용을 당해연도 결산에서 제외하고 차기년도 회계에 반영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보라매결산
28	현지시정	협진수당과소계상	2013. 12. 27. (1일간) 소화기내과 000교수가 서귀포의료원에서 협진을 시행하고, 2013. 12. 30. 서귀포의료원으로부터 입금된 1,000,000원 중 900,000원은 협진의인 000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미지급급여)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00,000원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전액 1,000,000원을 당해연도 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여 협진수당(미지급급여)을 계상하지 아니함.	잡이익으로 처리한 협진수당 1,000,000원 중 000교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900,000원은 당해연도 비용(미지급급여)으로 계상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보라매결산
29	현지시정	기타총당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과소계상	보라매병원 교수직에 대한 퇴직급여도 동 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 퇴직금 금액은 추산할 수 있는 등 일반	3년이내 퇴직자(000교수 등 9명)의 퇴직급여 327백만원과 재	보라매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기업회계기준상 총당부채 각 직 교수(△△△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보라매 교수 등 113명) 병원은 동 퇴직급여 관련 총당의 퇴직급여 5,2 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상기 13백만원 등 총 소송관련 총당금이 계상하지 5,540백만원을 아니함.	각각 기타총당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으로 추가 계상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30	현지시정	회계 계정과목 분류 부적정	2013년 간호부 MB0 워크숍 등 2건, 1,486,650원은 워크숍 경비로 상기 회계규칙에 따라 기타행사비(51352)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기타의 복리후생비(5132999) 계정으로 처리하는 등 총 82건, 43,613,140원은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회계 계정과목 분류가 부적정한 총 82건, 44,939,310원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보라매결산
31	시정	신용카드 공용매출전표 대금 특약 미체결	보라매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체 진료비 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공용매출전표사용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므로써 2013년 기준 서울대학교병원의 공용매출전표 특약단가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7,430,456원(추정액)의 추가 수입효과를 얻지 못함.	가맹점 계약 외 별도로 신용카드사와 “공용매출전표 사용 특약” 을 체결함	보라매결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32	시정	유형자산(구 축물) 불용 처분 누락	1991.10.31. 취득한 희망관 오페수처리설비는 희망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인 2011.6.17.에 철거된 바, 동 자산 운용부서인 시설팀은 오페수처리설비 철거와 함께 규정에 따라 물류자산팀으로 불용 신청하여야 하고, 물류자산팀은 서울특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동 자산이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희망관 오페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함	보라매결산
33	중징계	강남센터 단체검진 기업 미수금 횡령 및 관리감독 태만	강남센터 ○○○은 미수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채권 발생일이 최장 2년 6개월이 지난 발령일(2013.8.4.)까지 15건, 26,192,000원이 청구되지 않았고, 청구 후 최장 2년 8개월이 경과됐음에도 10건, 20,684,000원이 미징수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11.10.13.부터 2013.12.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총 246,453,237원을 횡령함.	병원 수입금 횡령, 허위보고, 공문 및 직인 무단폐기, 미수금 관리 업무소홀,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제 6조(성실의무)을 위반한 ○○○을 중징계(해임)함.	강남센터
34	고발	강남센터 단체검진 기업 미수금 횡령	2011.10.13.부터 2013.12.31.까지 총 14회에 걸쳐 총 246,453,237원을 횡령하였음.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조치함.	강남센터
35	중징	강남센터 단	△△△는 ○○○의 직상급자	△△△는 하급자	강남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계	체검진 기업 미수금 관리 감독 태만	(강남센터 행정팀장)로서 ○○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였음.	에 대한 감독의 무 소홀, 미수금 관리 업무 및 동 업무 인수인계 태만 등으로 중징계함.	센터
36	경징계	강남센터 단 체검진 기업 미수금 횡령	○○○은 2013.8.5. ○○○의 후임자로 기업미수금에 대한 인수인계시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음.	○○○은 미수금 관리 업무소홀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함.	강남센터
37	경징계	강남센터 단 체검진 기업 미수금 관리 감독 태만	◇◇◇는 △△△의 후임자로서 정확한 해당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아야 했으며, 발령 전에 발생한 미수금에 대하여도 관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음.	◇◇◇는 ○○○의 직상급자로서 미수금관리 업무 및 동 업무 인수인계 태만 등으로 경징계함.	강남센터
38	환수 (46,216,000원)	강남센터 단 체검진 기업 미수금 횡령	최초 보고시 200,237,237원이었으나, 감사실 조사에서 추가로 46,216,000원을 발견하여 환수함.	추가로 발견된 46,216,000원 환수함.	강남센터
39	시정	강남센터 단 체검진 기업 미수금 계좌 관리 부적정	병원장 승인 또는 원무부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센터부원장 전결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상 담당직원이 기업미수금을 횡령하는 결과를 초래함.	문제가 된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을 경리과 관리통장으로 이체하고 동 계좌를 해지함.	강남센터
40	시정	강남센터 단 체검진 기업 미수금 관리	강남센터 행정팀은 미수금에 대한 발생월일, 채무자(기업	미수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	강남센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부적정	체), 발생액, 청구액, 입금일, 입금액 등 수입관련 전말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한 미수금이 경리과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기업에 청구되지 않는 등 미수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여 미수금 발생 금액, 청구액, 입금액 및 미수금 결산통보금액 등에 대한 차액을 조속히 소명하고, 누락된 미수금을 회수함.	
41	개선	강남센터 단 체검진 기업 미수금 관리 부적정	강남센터 행정팀은 미수금에 대한 발생월일, 채무자(기업체), 발생액, 청구액, 입금일, 입금액 등 수입관련 전말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한 미수금이 경리과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기업에 청구되지 않는 등 미수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미수금 발생, 청구, 수입금회계 처리 등의 모든 미수금 프로세스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함.	
42	기관 주의	강남센터 단 체검진 기업 미수금 관리 부적정	강남센터 행정팀은 미수금에 대한 발생월일, 채무자(기업체), 발생액, 청구액, 입금일, 입금액 등 수입관련 전말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생한 미수금이 경리과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거나 기업에 청구되지 않는 등 미수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강남센터에 대하여 기업미수금 관리 부실과 소속 직원 횡령과 관련하여 책임경영에 따른 말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엄중 주의 조치함.(기관 주의)	
43	통보	회계관계직원 관리 철저	○○○은 2013.8.5.부로 기획예산팀으로 인사발령 후 실방	기획예산팀 소속 직원이었던 ○○	강남센터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외부사무실을 원남별관으로 이전할 때, 이사비용에 대해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2013.12.31. 우리은행 계좌에서 28,530,625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무단으로 이체하고, 그 중 12,172,600원을 당일 ****계좌로 이체·지급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	○이 비원호텔이 사비용을 (12,172,600원)을 횡령금 중 일부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44	현지시정	첨단치료개발센터 철근 자재 보관·관리 미흡	철근 자재를 땅에 닿게 보관하고 그 중 일부는 우수에 노출되도록 보관하는 등 자재관리를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시설지원팀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	철근자재를 땅에 닿지 않도록 하였고 향후 우기 등을 대비하여 주요 자재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기조실 등
45	주의/환수(2,765,820원)	외과 수가가산 지원금 관리 미흡	경영혁신팀에서는 2013. 5. 27. 외과 지원금 중 전문진료지원직(PA) 인건비 210,000,000원을 108,147,000원으로 축소(4명->1명)하고 그 차액만큼 부서운영경비로 전용하면서, PA 1명에 대한 7개월간(2013. 6월~12월)의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및 임금인상분 등을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여서	수가 가산 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경영혁신팀에 “주의” 조치하고, 초과사용 금액 2,765,820원을 2014년 외과 수가가산 지원금 예산에서 차감하	기조실 등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2013년 외과 수가가산 지원금은 예산 1,904,896,000원 대비 0.15%인 2,765,820원을 초과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여 지원함.	
46	주의/ 환수 (360,000원)	고객 지원 팀 전도금 사용 관리(정산) 부적정	전도금 잔액 중 일부인 400,000원은 2013.12.31. 최초 내부 결재 시 계획에도 없었고 상품권 구매에 대한 내부결재도 없이 상품권(5만원권 2매, 1만원권 30매)을 구입하고 232,400원만을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상품권 중 4장(40,000원)만 독서이벤트용으로 사용하고서 360,000원의 상품권(28매)은 보관하는 등 전도금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전도금 관리업무를 소홀한 고객 지원팀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 하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28매, 360,000원)을 병원에 환수 조치함.	기조 실 등
47	주의/ 시정	차세대 PACS 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미흡	개발업체에서는 방화벽 해제와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설정을 통해 본원-분당 간 PACS영상을 양방향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전체 305 M/M 중 4M/M, 1.4%)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네트워크 환경설정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지 않은 관계로 본원-분당간 PACS영상을 조회 할 수 없고, 검수부서인 의료정보센터(PACS)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건에	계약관리 업무에 안전을 기하지 못한 PACS팀에게 “주의” 조치하고 개발업체로 하여금 본원-분당 간 PACS영상을 양방향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개발하게 함.	기조 실 등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대한 개발요구를 하지 않는 등 계약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함.		
48	주의	뉴욕오피스 철수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 부적정	국제사업국은 뉴욕오피스 청산에 따른 오피스 책상 및 소파 등 집기류 14점(잔존가 기준 4,964,039원)을 처분하면서 위 지침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에 대한 서면조사도 없이 임의로 현지 지인 ○○○에게 1,378,000원(잔존가액의 27.7%)에 매각하였고, 또한 오피스 운영 승강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 1,354,376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국제사업국은 동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피스 철수 직후인 2013. 10월부터 6개월간의 임차료 및 공용전기세 등 총 \$14,208.72(한화기준 약 14백만원)을 기 지출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계약종료시점까지 추가로 약 \$26,624.48(한화기준 약 27백만원)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책임대자를 찾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잔여 임차료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동 오피스 자산 매각시 자산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각하였고 잔여 임차료 지급의 최소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가 미흡했던 국제사업국에게 “주비 예산으로 운송 및 보관료, 의” 조치하고, 또한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잔여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기조실 등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49	개선	직원 정원관리 미흡	<p>기획예산팀은 2004.8.2.(기예820-10249호) EMR구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보조자 54명(단시간근무자)을 2004.12.31.까지 배정하였고 이후 여럿 차례 배정기간을 연장하였으나, EMR구축 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배정사유(한시배정, PC 조작 미숙 등)가 소멸되었으므로 배정인력을 회수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지속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내과 ○○○외 28명이 외래진료 지원업무(오더입력, 타과의뢰서 작성 등)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PA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팀은 이에 따른 정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PA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신경외과 ○○○ 교수와 성형외과 ○○○ 교수는 2013.08.01.부터 2014.07.31.까지(1년간) 장기연수자로서 연수시점에 정원을 배정하여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연수시점(2013.8.1.)보다 최대 5개월 이전(2013.03.01.)에 정원을 배정하여 인건비 과다지출 및 과잉정원 등</p>	<p>기획예산팀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29명의 PA인력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연수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배정시 배정 및 회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함.</p>	기조실 등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정원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함.		
50	개선	외부기관용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징수 관리 미흡	의료정보관리팀은 외부기관에 발급한 의무기록 발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리 실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13.1월 ~ 2014.3월까지 발생한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총 2,226,583건(1,084,160천원) 중 외부기관에서 발급 요청한 것은 521건 6,381천원이고 이중 3,792천원(59.4%)는 병원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589천원(40.6%)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등 의무기록사본 발급비용이 미흡하게 관리함.	의료정보센터장은 외부기관으로 부터 미수된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표본조사 결과상 2,589천원)을 조속히 징수하고 향후 외부기관에 발급하는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 수수료 관리에 만전을 기함.	기조실 등
51	개선	법률자문 등 자문관리 적정	기획예산팀은 고문변호사운영에 관한 내규 제4조(운영부서)를 준용하여 자문실적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나, 법률자문 위원인 ○○○ 교수의 자문실적은 아래와 같이 년 평균 6.2건이고, 통상적으로 매주 금(6시30분 ~ 7시30분)에 전화(구두)로 하는 자문에 대한 실적을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확인도 불가능하였으며,	향후 병원 경영에 필요한 법률, 행정, 간호 등에 관한 자문계약 체결 시에는 위촉한 자문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병원 경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 실적을 제출받아서	기조실 등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병원행정 자문인 박○○, 이○○ 위원과 병원간호 자문인 김○○ 위원 등은 자문의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자문위촉에 따른 각 분야별 자문의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됨.	DB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함.	
52	권고	위탁구매 계약에 관한 사무업무 추진 및 향후 대책 소홀	서울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16조의2(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제1항에 “원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소관 부서인 교육부와 한시적 승인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계약기간 만료 1년 이내에 협의를 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다는 사유로 2012.10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자체 구매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1년 전에는 Insourcing 및 Outsourcing에 대한 정책 결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승인 부처인 기획재정부(국고국 계약제도과)와의 사전협의를 필요하며 또는 2014년 내에 구매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위탁구매와 자체구매에 따른 장단점,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 업무인 구매업무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구매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련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함.	기조실 등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을 추가 반영하여 개발을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3	개선 주의	간호본부 등 시간외 근무 관리 부적정	간호행정팀 등에서는 소속직원이 정상근무 시간이외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명령부에 의하여 당해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얻은 다음에 행하여야 함에도, 간호본부, 급식영양과 등은 2012.1월부터 2014.4월까지 연장근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교육기간에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됨.	간호행정팀 및 급식영양과에 대하여 “주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거쳐 총무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연장근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함	간호부 진료 지원
54	환수 (3,075,600 원)	의료소모품 고가 구매 차액 미징수	서울대학교병원과 (주)○○○○이 2011.9.27. 체결한 위탁구매계약서 제3조(계약내용) 1항에 의하면 (주)○○○은 위탁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종전가격 또는 타 병원 거래 실례가를 최 대한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타 병원 거래실례가보다 고가로 구매할 경우 그 차액만큼 병원에 보상하게 되어 있음에도 Monopolar curved scissors외 7종은 동일한 품목임에도 분당병원보다 3,075,600원을 고가로 구매함.	(주)○○○○으로 부터 고가로 구매한 Monopolar curved scissors외 7종에 대한 차액 3,075,600원을 환수하고, 향후에는 동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간호부 진료 지원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55	환수 (107,715원)	위탁 계약 서비스 이용료 과다 지급	서울대학교병원과 (주)○○○ 사이에 계약 체결한 위탁구매계약서 제9조(서비스이용료)에 따라 2012년 6월 외자로 구매 계약 된 의료소모품 corevalve Aortic valve 외 2점 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외자 구매이므로 은행에 결제한 신용장 대금 기준으로 위탁계약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제반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입고금액을 기준으로 위탁구매 수수료를 산정하여 107,715원을 과다 지급함.	(주)○○○에 과다 지급된 위탁 계약 수수료 107,715원을 환수하고, 향후에는 동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간호부 진료 지원
56	시정	뇌사판정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불철저	뇌사판정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뇌사판정센터는 2012.1.20.부터 2014.4.26.까지 총 38회에 걸쳐 뇌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원장(31회) 또는 센터장(7회) 전결로 처리함.	미보고한 뇌사판정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	간호부 진료 지원
57	시정 · 주의	(주)○○○의 청렴계약 체결 관리 미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는 조건의 청렴계	(주)○○○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리과에 “주의” 조치하고 계약담당(원무부장)으로 하여금	간호부 진료 지원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주)○○○○은 단 1건의 청렴계약도 체결하고 있지 않음에도 경리과는 이를 시정요구하지 않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함.	위탁구매계약서에 제반 법령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토록 하였으며, (주)○○○○대표이사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와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58	시정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서류 미징구	서울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 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4.1.24. 발령한 ○○○○에게는 미안마 현지 중간관리자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도 회계규정에 따른 재정보증(신원보증보험)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음.	○○○○에 대한 재정보증서류를 징구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간호부 진료 지원
59	개선	건강 검진비 감면의 부적정	후원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감면은 5천만원 이상을 후원한 후원회원 및 후원회원의 배우자에 한하고 검진비 감면기간은 일시에 후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천만원 이상 후원은 1년, 1억원 이상은 3년, 3억원 이상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에도 ○○○○수진	서울대학교병원장은 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여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대외협력실과 협의하여 건강검진이용 권에 감면가능	간호부 진료 지원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자는 감면대상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감면 처리가 되었으며, 또한 ○○○ 수진자 외 2건은 감면규정 제5조에서 명시한 감면가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진비를 감면 처리함.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	
60	권고	외국인환자 후불진료비 청구 미흡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팀은 해외 환자에 대한 진료 종료시에는 원무과, 소아행정과 등으로부터 진료비 발생내역을 통보받아 해당 해외기관에 청구하고, 미수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43건 868,010천원의 미청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3년도 퇴원진료비 11건 208,707천원은 통상적인 징수기간에 비하여 지체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진료비 미수금의 조기징수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외국인 후불진료비 미수금의 적극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장기 퇴원미수금(후불진료비) 조기징수를 위해 진료비 청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간호부 진료 지원
61	권고	호스피스실 바자회 수익금 관리 부적정	호스피스실은 바자회 수입금을 병원 회계에 전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중 12,500,200원은 완화상담실(호스피스실) 명의로 함춘후원회에 기부하고, 7,204,950원은 자원봉사자 지원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호스피스실 운영비로 사용 중에 있으며 4,372,330원은 호스	서울대학교병원장(호스피스실장)은 바자회 운영을 통해 마련한 호스피스실 운영비를 관리함에 있어 동 자금의 투명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	간호부 진료 지원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피스실 사무실 내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음.	록 함.	
62	주의 · 환수 (70,268,284)	시 약 구 매 조 건부 임차장 비용 시약 단가계약 부 적정	서울대학교병원과 (주)○○○ 등 6개 업체와 체결한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대차 계약서 제4조[시약(진료재료) 가격]에는 “시약가격에 장비임대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약가격은 시약 명세서에 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23종의 시약단가는 시약구매조건부 임대차장비 계약서에 명시된 시약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총 70,268,284원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됨.	통 합 물 류 실 에 “주의” 조치 하 고 (주)○○○을 관리하는 경리과 로 하여금 70,286,284원을 “환 수” 하고, 통합 물류실로 하여금 향후 적정한 추 정가격 산정 및 투명한 제반 프 로세스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의료 장비 운영 실태
63	주의 · 환수 (13,807,500)	산부인과 수 익배분 초음 파진단기 배 분금 과다 지급	서울대학교병원과 (주)□□□ 간 2011.3.25. 체결한 초음파 진단기(Ultrasound System)의 수익금배분계약서 제4조(수익금 배분) 1항에 의하면 장비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장비가격(128,000,000원)이 보전될 때까지 양측이 50% : 50%로 배분토록 되어 있으나, 수익금 배분기간인 2011.4월부터 2013.7월까지(28개월) 총수입금은 283,615,000원이며, 산부인과에서는 이 중 50%인 141,807,500원을 (주)□□□에 지급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장비 보	산 부 인 과 에 “주의” 조치 하 고 향후에는 동 건과 같은 사례 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고, 과다 하게 지급된 수 익금 배분액 13,807,500원을 환 수함.	의료 장비 운영 실태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전가격인 128,000,000원 보다 13,807,500원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됨.		
64	주의 환수 (32,171,700원)	수익금 배분비 (SBRT/IMRT)의 수익배분금 정산 부적정	서울대학교병원은 2011. 7. 20. □□□(주)와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추적체부정위 방사선치료기 1대 및 영상유도세기조절 방사선치료기 1대를 수익금 배분 계약으로 각각 체결하였고 수익금배분계약서 제4조(수익금배분) 1항에 의하면 장비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장비 가격을 보전할 때까지 양측이 50%:50%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으나 고정 기구류 6종의 수입금(359,710,213원)에서 재료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로 수익금배분을 하여 업체에 32,171,700원을 과다 지급함.	방사선종양학과에 “주의” 조치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수익금 배분액 32,171,700원을 환수함.	의료 장비 운영 상태
65	주의	불용자산 부 산물 처리 미흡	자산운영부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고정자산처분조서 1부를 자산관리부서로 송부하고, 자산관리부서는 처분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불용결정하고, 매각 또는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영상의학과는 2012년 8월 General Biplane Angiography 1sys를 도입하면서 기존장비에서 발생한 차폐재료인 납을 매	영상의학과에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의료 장비 운영 상태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각 처분하지 아니하고 공사폐기물로 처리함.		
66	주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관리 부적정	회계규정 제227조 및 (주)□□□ 구매업무규정 제91조(계약보증금의납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주)□□□은 2010년부터 계약을 체결한 의료장비 전체 371건 중 60건(계약금액 6,192,471,509원)은 비록 계약이행이 모두 계약기간 내에 완료됐었다고는 하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0%, 619,247,150원)을 징구하지 아니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징구한 (주)□□□을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팀에 “주의” 조치함.	의료장비 운영 실태
67	주의 · 시정	의료장비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부적정	물류자산팀에서는 전체 2,353건 중 91건(계약금 5,440,017,930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544,001,793원)을 징수·징구하지 아니 함으로서 하자보수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물류 자산 팀에 “주의” 조치하고, 미징수(구)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징수(구)함.	의료장비 운영 실태
68	주의 · 시정	혈당측정기 시약 구매 조건부 장비 임차계약 부적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총무과는 2012. 8. 24. □□□(주)의 국내대리점인 ○○(주)와 혈당측정기(Accu-chek inform II) 95대 및 서버·SW 등 운영시스템(총 장비가격 : 269,331천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주의” 조치하고, 시약 단가를 조정함.	의료장비 운영 실태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p>에 대한 시약구매조건부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진단검사의학과는 □□□(주)로부터 2013.02.25. 35대(장비가액 : 70,263천원)를 추가로 납품하여 설치하였으나 이후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물류자산팀 또는 총무과로 하여금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차 계약을 변경하지 않게 하고 임의로 당초 시약구매조건부 장비임차 계약대수 95대보다 35대 많은 130대의 혈당측정기를 도입하여 사용함.</p>		
69	주의	<p>신규 장비도입에 따른 기존 장비 유지보수비 지급 부적정</p>	<p>진단검사의학과는 2003.03.18.에 도입된 Automatic Chemistry Analyzer(자동화학분석기) 2대를 노후화로 인해 2013.11.07.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 장비와 관련하여 의공학과에 유지보수계약 중지요청을 2개월 전인 2014.3.17.자로 늦게 통보하였고, 그 결과 기존장비 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4,304,667원(2014.01.15. ~</p>	<p>사용하지 않는 의료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킨 진단검사의학과에 “주요병원과 (주)□□□ 간 시약구매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기 유지보수업무에 안전을 기하도록 함.</p>	<p>의료 장비 운영 실태</p>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2014.03.31.)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70	엄중 주의 · 시정	시험용 의료 장비 운영관리 부적정	분당병원은 Demo장비관리 개선을 위하여 병원장 내부결재(2005.4.14.)를 통하여 자산관리부서의 승인 후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물류자산팀에서 관리하여 자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해오고 있는바, 단순 Demo하는 경우 성능 테스트를 위한 최소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테스트 최소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호흡기내과의 Chartis console 1점 등 총 2점의 Demo장비는 사용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물류 자산팀에 “엄중주의” 조치하고 동 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Demo장비 관리업무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호흡기내과 분과장과 이비인후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Demo장비를 의료기기법 등 제규정에 맞게 사용토록 함.	의료 장비 운영 상태
71	주의	의료장비 정비보수 용역 계약 관리 부적정	물류자산팀 의공파트는 정비보수 용역 계약 4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동 들에 대한 가동률을 산정하여 계약서상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부서(경리과)로 하여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물류자산팀 의공파트에서는 상기 정비보수 용역 계약 4건의 의료장비(총 7점)의 연간 가동률을 산출 및 확인하지 않고 재계약을 요청	물류 자산팀에 “주의” 조치하고 향후에는 의료장비 정비보수 용역 계약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함.	의료 장비 운영 상태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하는 등 정비보수 용역 계약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72	주의 · 개선	폐쇄형 전신 흡입 마취기 도입검토 및 운용관리 부적정	마취통증의학과는 폐쇄형 전신 흡입마취기 및 모니터 2대를 도입하고자 연간 34,944천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기자재도입 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기자재도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6. 30. 동장비(취득가 220,000천원=110,000천원×2대)를 도입했으나, 당초 기자재도입전검토조서에서 필요성 및 도입사유로 제시하였던 조건이 거의 충족되지 않은 채 운영됨으로서 장비도입 검토 및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마취통증의학과에 “주의” 조치하고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 하여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기자재도입 관리를 적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의료 장비 운영 실태
73	주의	기자재도입 전 활용도·수익성 검토 부적정	보라매병원 핵의학과는 2008.4월 3Head Gamma Camera 1set를 도입요청하면서, 수익검토에 월간 200건 45,915천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기자재도입검토조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장비의 실검사건수가 월평균 31.9건으로, 기자재도입전 검토조서에서 제시한 월평균 200건의 16%에 해당하는 월 32건 수준으로 당초 예상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결과적으로 기자재도입전 활용도나 수익검토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기자재도입 전 검토시 활용도와 수익검토 등을 적정히 하는데 소홀히 한 핵의학과에 “주의” 조치하고, 향후 동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자재도입검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의료 장비 운영 실태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74	주의 · 개선	기자재도입 전 검토 및 자산관리 미 흡	2011.2.10. 취득한 내과 심장 초음파 장비 1set는 VIVID E9 과 VIVID Q는 각각의 개별장비 이나 기자재도입전검토조서 및 실무검토서에는 VIVID E9에 대 하여만 스펙을 검토하고, VIVI D Q는 VIVID E9의 Accessary로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여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에 대한 검토없이 심의의결 받 았으며, 또한, 자산관리부서인 물류자산팀은 장비의 유지보수 및 폐기 등 관리에 적정을 기 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별로 관 리번호를 부여하여 수리 및 유 지보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에도, 별개의 장비인 VIVID E9 와 VIVID Q를 하나의 관리번호 만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자산관리가 미흡함.	기자재도입심의 위원회 안건 서 류 검토를 미흡 하게 처리한 물 류자산팀에 “주 의” 조치 하고, 동 장비는 관리 번호를 각각 부 여하여 자산관리 함.	의료 장비 운영 실태
75	시정 · 환수 (39,3 09,32 4원)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 부적정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유치 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공 급가액의 10%)만큼을 차감 징 수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국 제진료센터에서는 2013.1.1.부 터 2014.8.21.까지 28개 국외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및 협약서에 따 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위	28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 차감 징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분 39,309,324원을 “환수” 하고, 대리납부 등 관 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도록	분당 진료 부문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해 총지급액 중 부가가치세액 39,309,324원을 차감징수하지 않고 업체에 지급함.	함.(진행 중)	
76	개선 · 환수 (9,000,000원)	연구보조비 지급 부적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보조비지급내규 제 1조(목적)에 따르면 연구보조비는 의학 및 치의학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촉탁교수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게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동 내규 제5조(지급제한)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자 및 해외연수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의생명연구원지원팀은 6개월 이상 장기출장자 및 해외연수자는 임상연구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의생명연구원지원팀은 신경외과 ○○○ 교수 등 3인은 1년간 장기연수 대상자로 연구보조비 지급 제외자임에도 각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연수 시작일 이후 이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신경외과 ○○ ○ 교수 등 3인에게 지급된 연구보조비 9,000,000원을 “환수” 하고, 연구보조비 지급시 지급제외자에게 연구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 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	분당 진료 부문
77	개선 · 환수 (916,510원)	시간외근무 관리 및 당 지급 적정	영상의학과 보건직 □□□(수석기사, M2급) 등 보직자 13명은 총 386회 1,31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바, 이는 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제외원칙	보직자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무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방	분당 진료 부문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		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시간외근무 승인(명령)일에 정기휴가, 보건휴가, 외부교육 등으로 해당일에 시간외근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절센터 간호직 △△△는 2012.12.7. 정기휴가로 당일 근무하지 않았으나 2시간의 시간외근무가 승인(명령)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 15건 43시간의 시간외수당 916,510원이 부당하게 지급됨.	안을 강구하도록 하고(개선), 시간외근무가 부당하게 신청되어 지급된 관절센터 △△△ 등 10명(15건)에 대한 시간외수당 916,510원은 “환수” 함.	
78	주의 · 시정	건강증진센터 수진자용 죽 급식 연간 단가 계약 관리 미흡	업체에서 제공하는 죽식식단(단가 8,500원, VAT 포함)은 전복죽, 호박죽, 흑임자죽 중 택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수진자들의 요청에 따라 2014.3월부터는 계약서에는 없는 야채죽을 납품받아 수진자들에게 제공하였음에도, 계약부서에 계약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임의로 2014.3.1.부터 2014.7.31.까지 총 5,590개의 야채죽을 납품받아서 종전 계약품목인 전복죽 등의 단가(개당 8,500원)를 적용하여 47,515,00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음.	수진자용 죽 급식 연간 단가계약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건강증진센터에 “주의” 조치하고, 실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수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죽식단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함.	분당 진료 부문
79	주의	선택진료경	2014년 상반기 선택진료경비	심장혈관센터	분당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 시정	비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지급분을 표본 조사한 결과, 노인의료센터 등 29개 부서에 지급된 선택진료경비 902,451,056원 중 심장혈관센터 등 12개 부서는 교육연구자 재비 등 총 175,701,811원의 선택진료경비를 정산하지 않았음(미정산율 53.6%)	등 12개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정산하지 못한 선택진료경비를 정산완료함.	진료 부문
80	시정	약제부 소관 지침 미흡	소관 약제부 소관 산제조제지침, 임상역동학업무지침, 약처방발행지침 등은 2003년 및 2004년에 제정된 지침으로 이후 약제부에서는 동 지침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개정하였고 주관부서를 변경하였음에도 업무방법과 절차가 현행과 다른 2003년 및 2004년도 제정 지침이 그룹웨어에 게시되어 있는바, 이는 지침적용에 있어서 최신의 것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지침적용에 왜곡의 소지를 초래하는 등 지침 관리가 미흡함.	개정된 지침을 절차에 따라 규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최신의 지침을 그룹웨어에 게시하도록 함.	분당 진료 부문
81	개선	집중영양치료료 수가 신설 미흡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 영양불량환자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시행한 경우 ‘집중영양치료료(상급종합병원, 1건당 36,870원)’ 수가를 적용키로 행정예고 및 고시하여, 2014.8.1.부터 시행하였으나, 약제부는 수가발행 시스템 부재 및 집중영양치료팀	집중영양치료팀을 구성하였고, 집중영양치료료 수가발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가를 신설하여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함.	분당 진료 부문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구성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시행 1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 까지 집중영양치료료 수가를 신설치 아니하였음.		
82	시정 · 개선	의료정보 보안관리(사용자관리) 미흡	의료정보운영규정 제22조(인적보안) 제②항에 따르면, 의료정보센터장은 인사담당부서로부터 사직인사발령 문서를 통지받은 경우 및 사용자ID를 신청한 부서의 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사직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부서장이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ID의 사용권한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권한을 삭제하여야 하나, 의료정보센터(의료정보팀)에서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465명의 사용자ID는 회수 또는 삭제되어야 함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의료정보보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의료정보센터장)은 실습종료 등으로 퇴사처리된 465명의 의과대학 학생의 사용자ID를 삭제함(시정).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분당 진료 부문
83	통보	2013년 간호사 보수교육 미이수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및 2013년도 간호부 연간교육계획(간호 720-387, 2013.2.8 시행)에 따라 간호본부 소속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전원 이수하여야 함에도, 간호본부소속 간호사 1,079명 중 65명동 간호 2팀 소속 ○○○(개인번호1498) 간호사 등 4명은 2013년	간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 간호사 등 4명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하였고 보수교육을 미이수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을	분당 진료 부문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도 간호사 보수교육을 미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마련하도록 함.	
84	환수 통보 (4,040,000원)	부양가족 요건 상실 미신고로 인한 가족수당 부당 지급	인사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보수규정 제35조의 2(가족수당)에 의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등 3명은 본인이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양가족 요건 상실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최장 102개월 동안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였고, 또한 당시 복지과 내의 복지파트와 급여파트는 같은 과내에서 사망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임직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 발생 시 직원 본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가족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양가족의 사망 이후에도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 가족수당 부당지급을 차단하려는 내부적 노력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서울대학교병원장(인사과장)은 동건 부양가족요건 상실 미신고로 인해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 4,040,000원을 “환수” 조치하였고, 가족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함.	본원 행정 처
85	통보	징계관련 일상감사 수감관리 부적정	최근 정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이 시행됨에도 2014년 이후의 징계관련 사항(□□과 ○○○ 징계건 등 12	징계관련 정부의 방침 및 자체 감사규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함	본원 행정 처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건)은 최종결재권자(원장)의 결재 전 감사를 경유하지 않거나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없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후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86	주의 · 시정	교직원용 주차장 이용자 승인 및 관련 운영지침 관리 미흡	서울대학교병원 종묘주차장 운영지침(2012.5.2.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정하고 운영하다 2013.7.1.부터 비용절감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직원용 주차장을 홍익대 대학로캠퍼스 주차장으로 옮겼으나, 지침을 제·개정하지 않고 내부품의(교직원 주차장 이전(안), 2013.06.)를 통하여 이용자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종묘주차장 지침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함. 비상계획과에서는 지침에서 정한 이용대상자가 아닌 ○○○(비직원 연구원)에게 2013.7월부터 이용 승인함으로 12만원(8만원×14개월)의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내 타교직원의 주차장 이용에 기회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함.	외부 주차장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자를 이용 승인하고 해당 지침 관리를 소홀히 한 비상계획과에 “주의” 조치하고, 교직원용 외부주차장 이용자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함.	본원 행정 처
87	주의 · 개선	비상계획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관리	비상계획과는 보안장(△△△)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기출근에	시간 외·휴일·야간근무지침 등의 준수 및 관리에	본원 행정 처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부적정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신하여 관례라는 이유로 보안2팀 교대근무자와 동일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안장에 대한 합리적인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사전결재와 일일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하도록 하였고, 또한 주 12시간 또는 월 48시간의 한도를 넘는 근무를 지시하는 등 전반적인 시간외근무 관련 규정 준수 및 관리에 소홀함	소홀히 한 비상계획과에 “주의” 조치하고, 보안장에 대한 합리적인 연장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개선)	
88	개선	병원 차량 유류대 지급 무 부적정	총무과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유류 구입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함에도, 병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구입을 위해 병원 인근 주유소 3곳과 “유류구매 후불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정산하여 지급함.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본원 행정처
89	개선	시간외근무관리 부적정	중앙공급과 ○○○ 등 2급 직원 5명에 대해 총 47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지침을 위배함.	2급 이상 직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본원 행정처
90	경고	회계직원 재	회계직을 승계한 약품관리과	인사과에 “경	본원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 개선	정보증 관리 부적정	트 ○○○ 등 8명은 무보증 상태(연일수 982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회계직원의 재정정보증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고” 조치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재정정보증 관리체계 전반을 재 점검 하 도 록 함.	행정 처
91	주의 · 개선	최종검사 소홀 및 하자 보수 완료 확인서 미발급	시설부는 2012.01.01. ~ 2013.08.31.까지 시설공사 39건에 대하여 별도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하자보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함.	건축과와 설비과에 “주의” 조치하고, 하자검사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함.	본원 행정 처
92	현지 시정	재원환자 중간진료비 계산서 미발행	입퇴원관리지침 제 6호(진료비용 안내)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진료비 내역서는 재원 중 또는 퇴원환자의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진료비금액에 대하여 상세한 내역서를 환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자 ○○○에게 2014.6.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단 1차례도 중간진료비 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아 환자에게 진료비 상세내역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144,306,440원의 중간 납부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함.	동 환자에게 중간진료비 계산서를 발부토록 하여 2014.9.26. 144,306,440원을 중간 납부하였으며 향후 중간진료비 계산서를 주 1회 발부하여 미수 진료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	본원 행정 처
93	현지 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인사과로 하여금 부패행위자 처벌	본원 행정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이행실태 점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권고했으나, 인사과는 지난 4월 동 권고를 접수한 이후, 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규정개정 및 제도신설 등에 대한 수차례 내부 검토를 진행하여 왔으나, 이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치기한 및 이행실적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것으로 드러남.	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제반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여 기한 내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하여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실적”을 2014.1.10. 제출함.	처
94	현지시정	원내 발신전용 전화번호 관리 부적정	서울대학교병원은 biz △△△(별정3호)을 2072국번으로 개설하여 매월 (주)◇◇에 사용회선만큼 기본료를 지급함에도, 원내 발신전용 전화회선 총 1973회선 중 7회선은 용을 안 하고 있으나, 내선번호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기본료(587,400원)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설비과장으로 하여금 7회선에 대하여 즉각 사용 중지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하였음.	본원 행정처
95	환수 (997,725원)	공동간병인 파견계약에 따른 퇴직적립금 정산 부적정	파견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2013.12.31. 기준으로 정산하여 2013.12월분 파견대가 지급시 함께 지급키로 하여 2014.3월 (주)○○○에 퇴직적립금 40,536,085원을 지급 하고, 퇴	퇴직적립금 정산 누락된 997,725원을 환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보라매 진료부문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직적립금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계약 연장기간(2014.1월~3월) 중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파견자 6명의 퇴직적립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997,725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음.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96	개선	자산에 대한 보험관리 업무 부적정	물류자산팀은 보험가입 대상 기준일 이후(2014년 3월 1일)부터 취득한 자산인 붙임의 PACS NAS 저장장비 외 96품목에 대해서 보험에 추가 가입하지 않았으며, 내용연수(5년) 경과한 고가장비 Robot Surgery System 등 301점(취득가 359억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2014.3.1.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의 보험 가입여부 검토 등 자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보라매 진료부문
97	개선	교직원 근태 관련 규정 준수 불철저	특수외래간호과 ○○○ 등 총 3명은 출장명령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방사선종양학과 □□□는 2013.4.10.(수)부터 4.12.(금)까지 포상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일반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인사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직원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보라매 진료부문
98	통보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관리 부적정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비 감면규정 제3조(감면대상)를 2014.1.8일자에 개정하였고, 본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보라매 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도 14.3.1일자부터 시행	방만경영 개선 차원에서 시행한 진료비 감면 규모 축소 시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개선방	보라매 진료부문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토록 하였으나, 개정되어 삭제된 감면코드를 적용하여 2014. 3.1.부터 현재까지 총 735,000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함.	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함.	
99	주의 · 개선	현장 혈당 검사 시행자 기록 관리 부적정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EMR 운영 지침서 3. EMR 결과입력 및 보고지침」에 따라 병동 등의 혈당검사 시행자는 본인의 사번을 혈당측정기에 입력하고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EMR에 본인이 시행자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총 46,793건 중 1,189건은 본인 ID(사번)가 아닌 임의의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 EMR 운영 지침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검사 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장 혈당검사 시 검사시행자 기록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간호부에 “주의” 조치하고, 검사 시행시에는 검사시행자가 확인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함.	보라매 진료 부문
100	개선	급식용구 중 식기류 단가 계약 미체결	환자 급식용구 중 세제류, 종이컵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거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환자용 식기류(PC, 멜라민)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물품을 납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환자용 식기류(PC, 멜라민) 품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을 거쳐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보라매 진료 부문
101	개선	청렴교육 이 수율 관리 부적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사의 교육이수율은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직의 교육이	청렴교육의 의사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	보라매 진료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수율 98.7%와 비교할 때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안을 강구하도록 함.	부문
102	개선	응급수납용 키오스크 활용관리 미흡	원무과 외래에 있는 키오스크(27대)는 월평균 2,162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응급의학과에서 관리하는 응급수납용 키오스크(1대)는 전산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월평균 7건의 저조한 사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응급수납용 키오스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함.	보라매 진료 부문
103	주의 · 개선	단체 종합 건강검진비 감면 행정처리 부적절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는 진료비 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단체에 대한 감면 적용 시 단체별(기업별)로 원장까지 내부결재를 득하고 단체검진 협약 체결을 통해 검진비를 감면하는 것이 절차임에도, 2012. 1월부터 2013. 12월까지 4곳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여타 유사한 사례와는 달리 원장의 내부결재나 별도의 협약서 작성 등 행정절차 없이 총 49건 5,880천원을 감면한 것으로 확인됨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감면처리한 종합건강검진센터에 “주의” 조치하고, 단체 건강검진 업무매뉴얼을 제정하도록 함.	보라매 진료 부문
104	통보	무료접수 코드 관리 적정	2012.1.1.부터 2014.9.30.까지 보라매병원 소속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오더 내면서 무료접수 처리하여 진료접수비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 총 92명의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장은 무료접수코드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	보라매 진료 부문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오더를 내면서 총 141차례에 걸쳐 무료접수로 처리함.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105	권고	외래진료 시작시간 준수율 관리 미흡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외래 시작시간 미준수율(5분 이상 지연)은 전년도 동기간 평균 미준수율 8.7%보다 4.2%p 낮아진 4.5%로서 병원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3.22. 순환기내과(전임의 1년차 ○○○)의 경우 진료 시작 시간보다 65분 늦게 진료를 시작하는 등 아래와 같이 일부 진료과의 경우 전년도보다 진료시작 미준수율이 상승하거나 평균보다 상회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외래진료 시작시간 미준수율이 병원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거나 전년 대비 상승한 일부 부서의 경우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외래진료 시작시간 준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보라매 진료부문
106	주의/시정	연구기기 기부채납 관리 부적정	임상연구규정 제17조(연구기기의 기부채납)에 ‘연구비에 의해 구입된 고가의 연구기기는 당해 연구가 종료된 직후 병원에 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1.6월 이후 연구가 종료된 BIOPAC SYSTEMS 등 연구기기 111점(취득가 : 411,038,345원)은 병원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병원 자산에 미등재 되었음.	의생명연구원의 행정과에 “주의” 조치하고, 미등재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기부채납 후 자산 등재함.	본원 소아/암/의생명
107	주의/시정	강남센터 교	강남센터 ○○○는 2012.5.21.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환수 (86,630원)	직원 근태관리 부적정	부터 5.26.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을 다녀왔으며, 강남센터 □○○○와 □□□□□는 2012.8.1.부터 8.3.까지 생리휴가 및 하계휴가를 사용하여 인사과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 기간 중 사용한 생리휴가(1일)가 급여에 반영되지 않아 급여에서 생리휴가공제액 86,630원이 공제되지 않는 등 근태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됨.	장은 근태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강남센터 □○○○와 □□□□에게 “주의” 조치하고, □□□□의 생리휴가공제액 86,630원을 “환수” 함.	소아/암/의 생명
108	주의/ 통보	연구 실험 안전 환경 관리 지침 미준수	연구원장은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구실험부에서는 동 지침상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지 않은 등 연구실험부 내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의생명연구원 연구실험부에 “주의” 조치하고, 의생명연구원 실험·실습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마련함.	본원 소아/암/의 생명
109	주의/ 시정	강남센터 임상데이터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강남센터 임상데이터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상데이터위원회는 5명의 “운영위원단”을 구성하고 데이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례적인 운영	강남센터 헬스케어 연구소에 “주의” 조치하고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	본원 소아/암/의 생명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회의」에서 데이터 제공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운영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총 10회에 걸쳐 임상데이터를 제공함.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110	시정	선택진료경비 정산절차 미준수	선택진료경비및관련경비집행내규 제7조(관리 및 정산) 1항 내지 5항에 의하면 교육연구자 재비를 지급받은 부서의 장 및 교직원은 전월의 집행내역기록 관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소아청소년과는 동 선택진료경비및관련경비집행내규에 따라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정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반기별로 자체에서 정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교육연구자재비 집행내역을 정산주관부서장인 소아진료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택진료경비 정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본원 소아/암/의생명
111	주의/통보	연구 실험 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부적정	「연구용검사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업무처리절차) 2호 내지 4호 및 제6조(적용수가) 관행수가)는 후불로 하고 후불한 검사료는 연구용 검사 수행 부서에서 의생명연구원에 청구하며, 의생명연구원은 연구비에서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구실험부와 전임상실험부는 관행적으로 연구 시험시설 사용료를 연구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미수금을 발생케 한 연구에 의한 검사료(보험수가 또는 실험부와 전임상 실험부에 ‘주의’ 조치하고, 의생명연구원 연구비관리시스템(CRIS)에서 자동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본원 소아/암/의생명



연번	처분 사항	지적사항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고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등 동 지침을 따르지 않아 감사일 현재 3개월 이상 미납된 사용료가 884건(753,673,007원)인 것으로 확인됨.		
112	시정	암병원 미술 품 관리 미 흡	암병원 미술품인 ‘빛의감촉 97’ 등 17점에 대해서는 2012.5.3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전시중인 것으로 확인됨.	미술품 17점에 대하여 병원 자산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운용토록 함.	본원 소아/ 암/의 생명
113	권고	어린 이 병 원 환자급식 위 탁계약 과업 지시서 작성 미흡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위탁계약(2014.5.12)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및 급식업무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탁업체에서는 월 1회 정기 균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위탁업체가 자체적으로 균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을 결정하는 등 과업지시서에 검사하는 균 종류, 기준 및 실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음.	차기 계약시부터는 과업지시서 작성시 필요한 검사 종류, 기준 및 검사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어 환자 급식이 보다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본원 소아/ 암/의 생명